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2015년 12월 pp.267~294
한국세무학회

K-IFRS 1136과 다른 기준서에 의한 손상측정기준의 상충과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

윤재원*

<요 약>

본 논문은 K-IFRS 1136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창출단위를 기준으로 한 영업권 손상검사의 적용 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기준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손상측정기준과의 상충문제가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IFRS 1136의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의 손상검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손상모형을 채택하여 다른 자산의 손상이 영업권 손상차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권 손상검사 전에 손상징후가 있는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와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에 일관된 측정기준(회수가능액)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개별 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으로 측정되도록 하여, 영업권 손상검사를 실시할 때에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미인식 손상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업권 손상차손의 회계정보 신뢰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훼손된다.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손상검사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출채권은 K-IFRS 1139에 따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손상평가되지만, K-IFRS 1136에 따라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때에는 예상손실까지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대출채권 손상평가의 측정기준의 차이(예상손실과 발생손실의 차이)가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어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이 훼손되게 된다.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과 정보유용성 관점에 볼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개별 자산의 손상평가와 영업권 손상검사가 통합될 수 있도록 일관된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기준의 미비점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jwyoona@hongik.ac.kr

본 연구는 현금창출단위에 의한 영업권 평가의 적용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준서간 손상측정기준의 상충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K-IFRS 도입 초기에 영업권 손상검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와 문제점을 논의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손상평가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권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한 실증연구와 달리, 기준 자체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는 영업권 손상 차손 정보의 유용성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기준 자체의 미비 또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할 수 있음을 환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의 회계담당자, 감사인 및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을 갖는다. 끝으로 회계기준 제정기관 및 감독기관에게는 관련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기준의 해석 및 개정의 있어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영업권 손상차손, 현금창출단위, 신뢰성, K-IFRS 1136

I. 서 론

영업권은 기업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지만, 현재의 평가기법으로는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난제로 남아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장부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한 영업권의 후속평가에 관하여도 많은 논란이 있다. 오랫동안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을 적용하다 최근에 와서야 손상평가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손상평가의 방법론도 측정단위와 측정기준에 관해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의 접근방식이 상이한 상황이다. 국제회계기준은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회수가가능액 측정기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회계기준은 개별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측정기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 스스로도 영업권의 후속회계처리를 심의하며 직면한 주된 문제를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을 표현의 충실성과 실무적 문제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형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결론도출근거에 밝히고 있어 현행회계기준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¹⁾ 이는 국제회계기준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회계기준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영업권 손상차손에 관하여는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IFRS 1136은 현금창출단위기준으로 영업권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 전체에 대해서만 검토되어야지 집단 내에 있는 개별 자산, 즉 영업권에 대해서 개

1) K-IFRS 1136 결론도출근거 BC131E

별적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회계기준의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는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K-IFRS 1136은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두어 일반적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와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업권 자체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이러한 개별 자산의 평가 목적은 현금창출단위에 의한 평가방법론과 구조적인 모순을 발생시킨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평가는 원칙적으로 영업권과 다른 자산을 하나의 자산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회수가가능액을 측정함에 있어 반영되는 다른 자산의 미인식가치(예: 역사적 원가로 인식된 자산의 공정가치 증가분)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즉, 개별 자산으로서 영업권이 손상되었다라도 장부에 인식되지 않은 다른 자산의 평가이익이 있다면, 영업권 손상차손은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IASB는 이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채택하는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 반면, 장부가액에 인식되지 않은 다른 자산의 미인식손상에 관하여는 영업권 손상차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련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모든 자산에 대해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영업권 손상검사 전에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셋째,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와 다른 자산의 손상검사에 의도적으로 일관된 측정기준(회수가가능액)을 채택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이 장부금액에 모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장부금액과 회수가가능액에 반영되는 손상차손(금액)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³⁾ 그렇지 않으면, 장부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자산의 미인식손상이 회수가가능액 추정시 반영되어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 동 금액이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우선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영업권은 실질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는데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이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어 표현의 충실성과 신뢰성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IASB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의 손상검사를 통합하는 모형을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상평가 측정기준이 적용되어 기준서간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손상검사의 통합을 해하게

2) K-IFRS 1136 결론도출근거 BC135.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은 기껏해야 영업권 장부금액이, 취득한 영업권과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 모두에 의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에서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3) K-IFRS 1136 결론도출근거 BC136. “...IASB는 회계상 적절한 측정목적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가능액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36에서 회수가가능액 결정을 위해 채택한 측정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영업권이 장부금액에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가능액을 측정할 때에도 그러한 측정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권 손상검사가, 다른 자산이나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IAS 36에 따라 실시하는 손상검사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이점이 생길 것이라고 보았다.

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IASB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지만,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기업(예를 들어, 금융업)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K-IFRS 1139에 의해서 손상평가되는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손상검사의 사례를 통해 이를 문제점을 분석하고 회계기준 해석·적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K-IFRS와 관련 결론도출근거를 중심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손상평가 측정기준의 상충에 따른 회계인식의 결과는 K-IFRS 1136의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며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에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로 상충되는 손상기준을 기준의 문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보유용성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면이 강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 K-IFRS 36에 의한 영업권 손상검사를 IFRS 39에 의한 대출채권의 손상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관점에서 해석·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기준서간 상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정 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 초기에 실무적 관점에서 집필된 선행연구는 주로 영업권 손상검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와 문제점을 논의한 데 반해, 본 연구는 현금창출단위에 의한 영업권 평가의 적용원리에 주안점을 두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손상측정기준의 상충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둘째, 기존의 실증연구는 현행 기준 하에서 손상평가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권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는 기준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성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영업권 손상차손 정보의 유용성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기준 자체의 미비 또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할 수 있음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자산을 보유하는 산업(예 : 금융업 등)에 있어, 영업권 손상평가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기업의 회계담당자, 감사인 및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영업권 손상차손의 발생원인과 평가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공헌점을 갖는다. 넷째, 회계기준제정기관 및 감독기관에게는 관련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기준의 해석 및 개정의 있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제Ⅱ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K-IFRS 1136의 영업권 손상 회계기준에 대한 기본적 검토와 그 적용원리의 분석을 각각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사안의 쟁점인 K-IFRS 1136과 그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손상의 상충문제를 분석하고 제Ⅵ장에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끝으로 결론을 요약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영업권의 후속측정은 오랫동안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을 따라오다, 최근에 와서야 손상검사의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상각방식은 취득한 영업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반면 손상검사는 취득한 영업권은 소비되는 동시에 광고선전이나 고객서비스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내부창출영업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정액상각하는 것은 소비만을 반영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그 내용연수와 감소형태도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영업권 손상평가는 취득한 영업권은 내부창출영업권에 의해서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영업권 장부금액이 취득한 영업권과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모두에 의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에서 회수될 수 있다면 영업권을 상각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미국회계기준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손상검사방식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의 손상평가는 회수가능액의 추정에 있어 경영자에게 많은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업권 손상차손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는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조현우, 2009 ; 이우택, 2003).

K-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 유용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정태범, 2014 ; 오문성 등, 2010 ; 정휘영, 2013). 영업권 손상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새로 도입된 영업권 손상검사의 절차와 의미를 분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선행되었다. 권수영 등(2011)은 영업권 손상절차와 평가기법 전반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사례를 제공하는 실무적 지침서를 제시하였다. 손혁 등(2011)도 손상검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경영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영업권 손상절차의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논문도 제시되었다. 광수근 등(2011)은 유진그룹의 사례분석을 통해 영업권 상각폐지를 통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조기도입의 유인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오명전(2014)은 영업권 손상검사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면서 경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뢰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권 손상차손과 이익조정유인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노민영 등(2012)은 K-IFRS 도입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해 영업권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손상차손 지연인식을 통한 이익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백정한(2015)의 연구에서도 영업권 손상차손은 경영자의 사적정보의 전달보다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대현 등(2015)의 연구에서도 K-IFRS도입 이후 영업권 손상차손은 이익유연화 유인과 big-bath유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오히려 낮아져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K-IFRS 도입에 따른

영업권 손상검사는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재량권이 증가하며, 그러한 재량권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관점에서 행사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영업권 손상평가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업권 기준이 상각방식에서 손상평가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정보 유용성의 변화를 살펴본 외국 논문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먼저 SFAS 142의 도입 이후 미국자본시장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업권 손상차손은 수익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Godfrey and Koh, 2009), 과거 수익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재무분석가의 기대를 하향조정하며(Li et al., 2011), 미래현금흐름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Jarva, 2009)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영업권 손상차손이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 성과와 부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손상평가방식에 의한 재량권의 증가로 영업권 손상차손이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또한 구체적인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다양한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 Beatty and Weber(2006)는 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 상장폐지, 경영자의 교체 및 보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업권 손상인식 시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Ramanna and Watts(2012)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영업권평가의 결과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반영하는지 사적정보를 반영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이익조정 유인과 관련성이 높고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사적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영업권 손상검사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FRS를 도입한 영국과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이익조정유인이 검증된 바 있다(AbuGhazaleh et al., 2011 ; Jordan and Clark, 2004).

III. 영업권 손상에 관한 회계기준의 검토

1. 영업권 손상 회계기준의 핵심 사안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후속측정, 즉 손상검사의 핵심은 ‘측정단위’와 ‘측정기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고, IASB는 IAS 36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심도 깊게 검토하였다.

첫째, ‘측정 단위’에 관한 문제는 ① 구기준(IAS 36)과 같이 현금창출단위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과 ② 미국회계기준(SFAS 142)과 같이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이다. 둘째, ‘측정 기준’에 관한 문제는 ① 구기준(IAS 36)의 자산손상의 일반적인 측정 기준인 회수가능액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방법과 ② 미국회계기준(SFAS 142)과 같이 공정가액에 기초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이다.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하여 당초 SFAS 142의 ‘개별자산·공정가치접근법’의 관점을 반영한 공개초안을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IAS 36의 ‘현금창출단위·회수가능액접근법’을 유지하는 기준을 채택하였다. 결론도출근거에서는 SFAS 142의 ‘개별자산·공정가치접근법’의 관점 및 이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IASB는 SFAS 142의 접근법이 개정 전 IAS 36의 1단계 접근법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 금액을 측정하는 접근법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BC169)⁴⁾. 둘째, IASB는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과 원가가 그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BC170).

첫 번째 주장 근거는 SFAS 142의 접근법이 IAS 36보다 더 우수한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소 애매하다. 두 번째 주장 근거는 SFAS 142의 접근법을 수용한 공개초안은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효과가 작성비용을 초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에서 납득할만한 근거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 이는 영업권의 속성상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또한 실무적으로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ASB 스스로도 결론도출근거(BC131E)에 영업권의 후속회계처리를 심의하며 직면한 주된 문제를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을 표현의 충실성과 실무적 문제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형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완곡한 표현을 들어 인정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해석해 보면, 실무적인 문제로 영업권 평가에 관한 표현의 충실성을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서는 안되며 수용가능한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IASB가 영업권 손상검사에 있어 측정기준의 문제를 인정한 다음의 결론도출근거에도 잘 나타나 있다.

“IASB는 회계상 적절한 측정목적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였다(BC136).”

2. IFRS 36 영업권 손상검사의 기본원칙과 이점⁵⁾

IASB는 영업권이 잔여금액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회수가능액 결정을 위해 채택되는 측정기준에 관계없이 영업권 손상검사의 출발점은 영업권이 관련되는 영업이나 현금창출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BC136). 그리고 IAS 36의 회수가능가액 결정을 위해 채택한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IFRS 1136의 결론도출근거(BC)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K-IFRS 1136의 결론도출근거는 IFRS 36을 번역하여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론도출근거의 내용을 인용하여 분석할 때에는 IFRS 36의 용어를 사용한다.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스스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취득한 영업권이 장부금액에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도 그러한 측정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BC136).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권 손상검사가, 다른 자산이나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IAS 36에 따라 실시하는 손상검사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이점이 생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BC136).

현금창출단위에 의한 잔여금액 접근법에 따라 영업권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IFRS 36에서 다른 자산, 현금창출단위 및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일관된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손상검사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는 영업권 손상차손과 다른 자산 등의 손상차손이 뒤섞여 손상차손에 대한 표현의 충실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있어 회수가능액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IFRS 36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손상검사에 있어 일관된 측정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예시를 통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 개별자산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토

IFRS 36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자산별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을 결정한다.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하고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집단으로서 식별가능한 최소단위이다. IAS 36에서는 일련의 독립된 현금흐름이 서로 함께 운영되는 자산집단에 의해서만 창출될 수 있다면, 손상차손은 그 자산집단 전체에 대해서만 검토되어야지 집단 내에 있는 개별 자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BC165).

IV.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의 적용원리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이며 회수가능가액을 측정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와 일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영업권은 다른 개별자산 또는 개별자산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측정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 기준의 해석·적용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있다. 결론도출근거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IFRS 36의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 및 특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최초 취득시의 측정기준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취득자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잔여금액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BC134). 최초 취득시의 영업권에 대한 측정기준은 영업권 손상에 관한 후속 측정기준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2. 영업권 후속 측정의 기본 전제와 손상검사의 목적

IASB는 영업권이 자산이라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전체 가치를 유지하는 한(예를 들어, 기업이 광고선전과 고객서비스에 자원을 지출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되면서 내부창출영업권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하였다(BC131E). 또한,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을 별도로 분리해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항상 내부창출영업권에 의해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전제는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자산으로 구분한 근거가 된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은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는 손상검사의 목적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는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집단을 하나로 보고 실시하는 것이므로, 손상차손은 그 자산집단 전체에 대해서만 검토되어야지 집단 내에 있는 개별 자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영업권의 경우도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로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일반적인 현금창출단위와 같이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한 번의 손상검사를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업권 자체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IASB가 결론도출근거(BC135)에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다.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은 기껏해야 영업권 장부금액이, 취득한 영업권과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 모두에 의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에서 회수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데 있다(BC135).”

따라서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토와 달리 2단계로 실시된다. 먼저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를 먼저 실시하여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을 측정 한 후에, 다시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 전체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의 주된 목적이 현금창출단위 ‘전체’가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에 대한 손상검토가 선행된 후 잔여 금액으로 측정되는 ‘영업권’ 자체가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3. 영업권 손상검사의 적용원리(1) : 다른 자산의 미인식가치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는 집단 내에 있는 개별 자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산집단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검토하는 구조이다.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는 현금창출단위의 경우, 개별자산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제가 타당하다. 그러나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의 경우, 측정 기술상 현금창출단위접근법을 채택하고는 있으나 그 목적은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손상여부가 아니라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가치변동이 영업권 손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관한 IFRS 36의 적용원리를 예를 들어 살펴본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 내 자산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IASB는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나 이론적 내재가치는 SFAS 142의 개별자산·공정가치 접근법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다. 다른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식, 또는 공정가치 등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 ① 영업권의 장부가액,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내재가치)
- ② 다른 자산의 장부가액(손상평가 후의 가액), 다른 자산의 회수가능액

[사례1] 다른 자산의 미인식가치가 영업권 손상을 보호

현금창출단위 장부가액			현금창출단위 회수가능액			영업권 손상차손
영업권	다른 자산	합계	영업권	다른 자산	합계	
10	10	20	8	12	20	없음

※ 가정

- 영업권은 내재가치 관점에서는 손상(①=10-8=-2)이 발생
- 다른 자산의 장부가액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10)되고 회수가능가액은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로 측정(12)되어 미인식가치(②=12-10=2)가 있음

IFRS 36에 의하면, [사례1]의 경우 영업권 손상검사는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장부가액(20)과 회수가능가액(20)을 비교하여 실시하므로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어 장부금액에는 미인식된 다른 자산의 가치상승(2)이 영업권 장부금액의 손상(-2)을 보호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자산의 가치가 영업권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자산으로써의 영업권 손상평가의 측면에서는 표현의 충실성이 훼손되는 것이나,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측면에서는 영업권을 포함한 전체 자산집단의 손상은 없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IASB는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손상평가를 채택함으로써 다른 자산의 미인식가치가 영업권의 손상을 보호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IASB가 SFAS 142의 개별자산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를 볼 때 명확하다.

“현금창출단위 내 다른 자산은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일부분으로만 고려되는 데도 영업권은 내재가치계산을 사용하여 별도로 손상검사를 실시하면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즉, 미인식 영업권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장부가치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지만, 반대로 다른 자산의 미인식된 가치로 인하여 영업권 장부금액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다른 자산의 미인식가치가 나중에라도 인식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해 보인다(BC165).”

위 논거는 IASB가 밝힌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과는 상충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개별자산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할 때, 미인식 가치가 영업권을 보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신뢰성의 저하는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영업권 손상검사의 적용원리(2) : 다른 자산의 미인식손상이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FRS 36은 현금창출단위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는 구조로, 별도의 통제를 가하지 않는 한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된 다른 자산의 가치변동이 영업권 손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자산의 가치상승이 있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이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반대인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자산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검사를 통합하는 손상모형을 설계하여 그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 의도는 다음의 결론도출근거에 잘 나타나있다.

“IASB는 IAS 36이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검사를 통합하는 손상모형’에서 출발하고 있는 데 주목하였다. US GAAP이 영업권을 제외한 장기성자산의 손상검사를 위해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선별장치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IAS 36에서는 손상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권이 배분된 ‘더 큰’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할 때, 그 안에 포함된 자산이나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그 자산이나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 먼저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IAS 36의 문맥상 다른 자산과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 모두에 대한 손상검토가 이루어진 후에야, 더 큰 현금창출 단위의 손상차손이 그 단위에 포함된 영업권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내렸다(BC168).”

개별 자산의 손상검토가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와 일관된 방식으로 적절히 선행되지 않으면, 장부금액에 인식되지 않은 손상차손이 회수가능액 측정시 반영된다. 이 경우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어야 할 금액이 영업권의 손상차손으로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IASB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자산의 손상검사를 통합하여 다른 자산의 손상이 영업권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규정을 두어 다른 자산과 영업권 손상검사를 통합하고 있다. 첫째, 손상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다른 자산과 현금창출단위,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 모두에 대해 일관된 회수가능액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영업권 손상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자산 또는 더 작은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토를 먼저 실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결론도출근거에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다른 자산 등의 측정기준과 일관성있게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손상검사를 통합하는 이점(즉,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 제고)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IASB는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권 손상검사가, 다른 자산이나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IAS 36에 따라 실시하는 손상검사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이점이 생길 것이라고 보았다(BC136).”

이상의 적용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2]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미인식손상이 반영되는 경우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			현금창출단위 회수가능액			손상차손
영업권	다른 자산	합계	영업권	다른 자산	합계	
10	10	20	10	8	18	2

※ 가정

- 영업권은 내재가치 관점에서는 손상(①=10-10=0)은 없음
-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손상차손(2)이 인식되지 않음

[사례2]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산의 장부가액(10)보다 회수가능가액(8)이 작아야 한다. 그런데, IFRS 36에서는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자산에 대한 손상검토를 먼저 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가액(10)이 회수가능가액(8)에 미달하면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위 사례는 손상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개별자산의 손상이 적절히 반영되었다면 발생할 수 없다. 만약, [사례2]와 같이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회수가능액에 장부에 미인식된 손상이 반영되는 경우,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반영되어야 할 금액이 영업권의 손상차손으로 반영되어 표현의 충실성이 상실된다.

결론적으로, IFRS 36은 개별 자산과 현금창출단위(영업권 포함)의 회수가능액에 일관된 측정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검사의 단위의 차이에 의해 회수가능액의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다른 자산에 대한 손상검토가 적절히 선행되어지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회수가능액에 미인식손상은 반영될 수 없다.

5. 영업권 손상검사 적용원리의 함의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IFRS 36의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는 일반적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평가와 목적과 방법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적으로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손상검사의 체계 내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을 먼저 반영한 후에 영업권 자체의 손상차손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업권을 개별자산이 아닌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 평가하는 기본구조 하에서, 다른 자산의 미인식된 가치변동은 영업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른 자산의 미인식된 가치변동(즉, 미인식가치와 미인식손상)이 영업권 손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IASB의 입장은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다른 자산의 미인식가치는 회수가능액에 포함하여 영업권 손상을 보호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한다. 반면, 손상검사의 통합을 통해 다른 자산의 미인

식손상은 회수가능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자산의 손상이 영업권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이 그 단위에 포함된 영업권과 관련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자산과 영업권의 손상차손에 대한 표현의 충실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여 회계정보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V. IFRS 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의 손상과 상충문제

IFRS 36은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의 손상검사를 통합하여 다른 자산과 일관된 측정기준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을 측정하도록 구조화되어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IFRS 36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음의 자산은 IFRS 36과 다른 손상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 내에 IFRS 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이 속하게 되면 IASB의 의도와 달리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의 손상검사가 통합되지 못하고 상충이 발생된다.

- (1)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 (2)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 (3)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 (4)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 (6)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 (7)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 (8) 이연신계약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 (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기준서간 상충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IFRS 36과 별도 기준서에 의한 자산손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면,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사례3] IFRS 36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자산의 미인식손상이 반영되는 경우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			현금창출단위 회수가능액			손상차손
영업권	다른 자산	합계	영업권	다른 자산	합계	
10	10	20	10	8	18	2

※ 가정

- 영업권은 내재가치 관점에서는 손상(①=10-10=0)은 없음
-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는 별도의 기준서에 의해 적절히 수행되었으나, IFRS 36의 회수가능가액과는 측정기준의 차이(②=10-8=2)가 있음

[사례3]은 [사례2]와 그 수치가 동일하나 기준서간 자산손상 측정기준의 상충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10)과 IFRS 36에 의한 회수가능액(8)이 일치하지 않는 예를 보여준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에서 다른 자산을 포함한 장부가액 전체와 회수가능액 전체를 비교하게 되므로, 다른 자산의 손상기준의 차이로 인해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미인식손상(②=2)이 회수가능액에 반영된 경우, 그 금액은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된다. 이는 개별자산에 대한 기준서간 자산손상 측정기준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영업권의 손상차손으로 잘못 인식된 것으로, 영업권 손상차손의 표현의 충실성이 훼손된다.

또한, 자산손상에 대한 기준서간 상충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개별 자산의 손상을 원천으로 인식된 영업권 손상차손은 추후 개별자산의 손상평가를 통해 재차 인식되는데,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이중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실질이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임에도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손실은, 추후에 개별 자산의 손상평가를 통해 그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다시 인식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이 낮아지고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영업권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으므로 서로 상계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개별 자산의 손상을 원천으로 한 동일한 손실이 장부에 이중으로 반영되지만 달리 조정될 수 없어 불합리하다.

둘째, IFRS 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이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속한 경우, 그 개별 자산의 손상은 실질적으로 IFRS 36의 회수가능액으로 재측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별도의 기준서를 통해 손상을 측정하고자하는 취지에 반한다. IFRS 36의 적용이 배제되어 별도의 기준서에 의해 손상평가되는 자산이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경우, 그 자산은 먼저 별도의 기준서가 정하는 측정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다음으로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해 다시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어 회수가능액으로 기준으로 측정된다. 이 때 별도의 기준서에 의할 경우 장부에 인식되지 않지만 회수가능액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 미인식 손상이 발생하고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결국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상황에 따라 이에 속한 개별 자산의 손상은 IFRS 36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액 기준으로 재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개별 자산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IFRS 적용을

배제한 자산을 영업권이라는 전혀 다른 자산의 손상검사를 통해 다시 IFRS 36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별도의 기준서를 제정한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IASB가 의도적으로 IFRS 36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기준서를 제정하였다면, 개념적으로 해당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 손상차손 외에 그 자산을 원천으로 한 미인식된 손상차손은 발생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 손상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특정 자산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둔 경우, IFRS 36의 측정기준과 상충이 있다면 별도의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목적적합할 것이다.

셋째, IFRS 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이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동일한 자산 손상을 원천으로 하는 손실이 다르게 측정되어 일관성이 없다.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면 회수가가능액으로 측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측정된다면, 동일한 자산에 대한 손상이 그 실질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자산이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속할 경우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별자산의 속성이 상실되고 IFRS 36에 의해 재측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그 현금창출단위를 오로지 전체로 보고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산의 손상을 반영한 후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는 영업권의 손상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려는 것에 있음을 환기할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서간 손상기준의 상충으로 인해 IASB가 IFRS 36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영업권 손상차손이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면, 이는 기준의 미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IASB가 신뢰성의 중대한 훼손을 사전에 알고도 결론도출근거 등을 통해 밝히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기준서를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누락된 것은, 기준서의 명문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기준서에 명시된 규정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달리 해석하여 흠결을 치유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요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미비점의 경우에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표방하는 IFRS 체계 내에서 목적적합한 해석·적용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VI.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권 손상검사의 사례분석

다음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있어 기준서간 상충문제를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금

용기관의 영업권 손상검사 사례를 통해 회계인식의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타당한 회계처리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출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 이유는 결론 도출근거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금융자산의 손상은 K-IFRS 1139에서 규정하고 있다(BCZ7)는 사실만을 적고 있을 뿐이다. 유추해 보건데, 우선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회수가능액에 의한 손상평가와 중요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가치 이외의 기준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예: 본 건과 같은 대여금과 수취채권 등)에 대해서는 유·무형자산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금융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기준서에서 금융자산 평가 전반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중점을 두고 손상기준도 함께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논문에서 금융기관의 예를 채택한 이유는 자산손상에 관한 기준서의 상충문제는 금융자산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금융업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FRS 36의 영업권 손상검사는 주로 유·무형자산을 주요자산으로 하는 제조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어서, 본 사례와 같이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금융업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IFRS 36의 영업권 손상검사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고안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서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⁶⁾ 따라서 영업권 손상차손에 관한 신뢰성 문제가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 가정>

-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한다.
- 영업권은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현금창출단위에 적절히 배분되었다.
- 대출채권은 K-IFRS 1139에 의해 발생손실모형에 따라 적절히 손상평가 하였다. 대출채권의 손상은 K-IFRS 1136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영업권은 K-IFRS 1136에 따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가치를 측정한다.
- 사용가치 측정에 관하여는 다음의 가정을 전제한다.
 - ① 사용가치로 측정되는 회수가능액(K-IFRS 1136에 의한 측정)에 장부가액(K-IFRS 1139에 의한 측정)에 미인식된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이 추가적으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사용가치 측정시 대출채권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을 예상손실모형에 기초하여 추정한다면, 발생손실모형에 의한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은 회수가능액에는 반영된 대출채권의 가액보다 작을 것이다.
 - ② 사용가치 측정시 영업권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할인액(영업권의 이론적 내재가치)은 장부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영업권의 내재가치는 손상되지 않았다.

6) 첫째,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동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무형자산을 주된 자산으로 전제함을 유추할 수 있다(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구체적인 사례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 구성	장부가액 (①)	회수가능액 (②)	자산 원천별 손상여부(③)	현금창출단위 손상여부(④)
대출채권	30		10	10
		20		
영업권	10	10	0	
합 계	40	30	—	10

1. 기본적 분석

위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영업권의 내재가치(10)는 장부가액(10)와 같아 손상되지 않았다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①=40)과 회수가능액(②=30)의 차이(10)는 대출채권에 대한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 측정기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은 K-IFRS 1139에 의해 발생손실기준으로 측정되는 반면, 대출채권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회수가능액은 K-IFRS 1136에 따라 예상손실기준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즉, 이 손상의 원천(③=10)은 대출채권이며 영업권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K-IFRS 1136은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 전체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우선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금액은 영업권의 손상차손(④=10)으로 인식된다.

이는 K-IFRS 1136과 K-IFRS 1139에서 자산손상에 대한 측정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영업권의 내재가치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기본 전제와 모순되는 회계적 인식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K-IFRS 1136에서 의도하는 바와 달리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표현의 충실성)이 저해되는 것이 명백해 보일 뿐 아니라, 앞 서 살펴본 여러 문제에 그대로 노출된다.

2. 손상검사의 상충문제에 대한 회계처리대안

IASB가 기준서간 상충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기준서 등 공식문건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는 문제는 기준의 해석·적용의 문제로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 때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문단 33)). 둘째, 수취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은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보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예시하였다(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검토대상 자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으로부터의 현금유입(예 : 수취채권과 같은 금융자산)(문단43)).

귀결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K-IFRS 1136에 의한 영업권 손상검사는 K-IFRS 1139에 의한 대출채권의 손상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별도로 해석·적용한다. 이하 ‘독립적 적용방법’이라 한다.

둘째, K-IFRS 1136에 의한 영업권 손상검사는 K-IFRS 1139에 의한 대출채권의 손상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관점에서 해석·적용한다. 이하 ‘통합적 적용방법’이라 한다.

가. 독립적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

IASB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두 기준서를 통합하여 해석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각 기준서는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독립적 적용방법의 논거가 될 것이다. 기준서간 상충문제나 미비점에 없다면, 개별 기준서는 각기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면, 이를 방치한 채 기준서를 문구대로만 적용하는 것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독립적 적용방법에 따를 경우, 대출채권은 개별자산으로 평가될 때에는 K-IFRS 1139에 따라 발생손실모형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어 평가될 때에는 회수가능액 기준에 따라 예상손실모형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이 때 대출채권 외 다른 자산 또는 내부창출영업권의 ‘미인식가치’가 대출채권 손상에 대한 측정기준 차이(발생손실모형 vs 예상손실모형)로 인해 발생하는 ‘미인식손상’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면,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회수가능가액은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영업권 손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와 같이 미인식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개별자산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손상차손(즉, 개별자산의 손상에 대한 측정기준 차이-발생손실 vs 예상손실-로 인해 발생한 손상차손)이 영업권 내재가치의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영업권 손상차손에 대한 표현의 충실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훼손을 야기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IFRS 36이 밝히고 있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과 방법론에 배치된다.

첫째,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대한 측정기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액을 채택한 근거로 손상검사 통합의 이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적용방법은 근본적으로 통합의 취지에 배치된다. 서로 다른 측정기준에 의한 손상검사를 독립적으로 적용하면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영업권 손상차손과 실질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을 하락시킨다.

둘째, IASB는 SFAS 142의 ‘개별자산·공정가치접근법’이 IFRS 36의 접근법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을 우려하였고,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과 원가가 그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개별자산 공정가

치접근법을 적용할하면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아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치된다. 또한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의 경우 공개초안에 따른 평가가 기존의 IAS 36에 비해 크게 복잡하거나 원가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즉, 본 사안을 독립적 적용방법에 따라 해석적용하면, IFRS 36이 영업권 손상검사에 있어 현금창출단위에 의한 회수가능액의 측정기준을 고수한 결정근거와 배치된다.

셋째, 본 사안을 독립적 적용방법으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IASB가 영업권의 후속회계처리를 심의하면서 표현의 충실성과 실무적 문제 사이의 균형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여금과 수채채권에 대한 측정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여 그 귀속을 분명한 밝힐 수 있는 손상차손을 내재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영업권의 손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금융업의 현금창출단위의 경우 대출채권은 가장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신뢰성의 훼손은 더욱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대출채권의 손상평가 측면에서도 손실의 이중인식, 현금창출단위 포함여부에 따른 비밀관적 측정 등 앞서 살펴본 문제가 발생한다.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 볼 때, 본 사안을 독립적 적용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영업권 장부금액이 영업권에 의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에서 회수될 수 있는지에 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K-IFRS 1136에 따른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BC135)에 반하고 수용가능한 신뢰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통합적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

기준서간 상충으로 인해 K-IFRS 1136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영업권 손상차손이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기준서의 의도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K-IFRS 1139에 의한 대출채권의 손상을 K-IFRS 1136에 의한 영업권 손상검사에 일관성 있게 통합하기 위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에 반영되는 손상에 대해 일관된 측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할 때 회수가능가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은 K-IFRS 1139(발생손실모형)이 아닌 K-IFRS 1136(회수가능액-예상손실모형)을 적용하여 재계산한다. 이하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라 한다.

둘째,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할 때 K-IFRS 1139(발생손실모형)에 따라 평가되는 대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일관성 있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회수가능가액(발생손실모형)을 추정한다. 이하 ‘회수가능액 추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라 한다.

기술적으로는 위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기준서에 어떠한 명문 근거도 없이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한 장부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장부금액은 영업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K-IFRS 1136을 포함한 다른 모든 기준서를 적용하여 측정한 최종 결과치로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반면,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준의 미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회수가능액 추정하는 방법은 원칙중심의 IFRS 체계 내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1136의 체계 내에서 회수가능액은 추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손상차손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준서에서 의도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 회수가능액은 정형화된 모형을 통해 기계적으로 산출되어서는 안된다. 추정모형은 영업권 손상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 결과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K-IFRS 1136은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 있어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정의 본질상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손상검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원칙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두 번째 논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사용가치에 관하여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정합된 개념과 측정방식이 아직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IFRS 1136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측정함에 있어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두 속성의 개념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정가치는 사용가치와 다르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이용할 가정을 반영한다. 반면에, 사용가치는 해당 기업에만 특정될 수 있으나 일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요소의 영향을 반영한다(53A).”

그러나 한편으로 IASB는 IFRS 36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업가치의 측정방식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업특유가치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개념과 모순된다.

“IASB는 IAS 36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용가치가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업에 특유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계산의 시발점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이 기업에 특유한 현금흐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즉,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에서 도출되며,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 현재가치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위험의 현행 시장 평가가 반영된 할인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56(개정 전 기준서의 문단 49)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

인물은,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발생시기 및 위험이 동등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요구할 수익률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자산의 사용가치에는 경영진이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반영한 것이다(C60)."

또한 IFRS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업가치의 측정방식은 현재의 자산상태에 기초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반적인 사업가치와 달리 추정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⁷⁾ 이는 사업가치의 측정방식은 유일한 것이 아니며, 그 추정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ASB는 사용가치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IASB의 의도였다는 사실은 개정 전 IAS 36의 결론도출근거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예측에 기초하여 사용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러한 예측에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을 개선 또는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IAS 36의 문단 37과 일관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BC74)."

위 규정은 IASB가 IFRS 36의 의도에 따라 '사용가치는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예측에 기초한다'는 일반적인 측정원칙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사안의 경우에도 경영진이 승인한 대출채권 현금흐름의 최근 예측이 예상손실모형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측이 IFRS 36의 손상검사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용가치는 기준에 명시된 원칙만으로는 그 개념과 측정방법을 구체적화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를 목적에 반하더라도 기준서상에 주어진 글귀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3. 타당한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판단 및 추가적 고려사항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표방하는 IFRS 체계 하에서 기준의 미비점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

7) K-IFRS 1136 결론도출근거 BC73. "일부 의견제출자의 제안에 관련된 것으로서 IASB가 검토한 두 번째 회계논제는 종전 IAS 36의 문단 27(2)와 문단 37(현행 IAS 36의 문단 33(2)와 44)간의 상충문제였다. 문단 27(2)에 따르면 사용가치는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측(미래의 구조조정과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경영진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에 기초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반면 문단 37에 따르면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과 자산의 성능을 당초 평가된 수준이상으로 개선 또는 향상시키는 미래 자본적지출의 효과는 사용가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K-IFRS 1139에 의한 대출채권의 손상측정기준을 K-IFRS 1136에 의한 사용가치 추정에 일관성 있게 반영하여 영업권 손상검사에 통합되도록 해석·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권 손상차손은 수용가능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어 영업권 손상검사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K-IFRS 1136의 영업권 손상검사는 주로 유·무형자산을 주요자산으로 하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 사례와 같이 대출채권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금융업의 영업권 손상검사에서는 신뢰성 훼손의 문제가 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영업권 손상검사는 정형화된 평가모형에 의해 기계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평가모형은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경제적으로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업권 손상검사는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계정보의 작성주체인 기업이나 감사인이 명문화된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사안을 넘어 기준의 미비를 해결하는 범주로까지 해석·적용의 범위를 넓혀 재량적인 판단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IASB 또는 IFRS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관과 회계감독기관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준서간 자산손상의 상충문제를 명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의 판단은 IASB가 의도하지 않은 기준서간 상충문제로 인하여 영업권 손상차손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작성자 및 감사인은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때에 대출채권에 대한 손상기준의 차이가 영업권 손상차손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는 개별자산·공정가치접근법에 따라 영업권의 내재가치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달리 채택된 사용가치 측정방법과 가정 등이 있다면, 이는 주석을 통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충분히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본 논문은 K-IFRS 1136에 의한 영업권 손상검사의 적용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기준서에 따른 손상검사와의 상충문제를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권 사

례분석을 통해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 문제를 고찰하였다.

K-IFRS 1136의 영업권 손상검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잔여금액의 측정방식으로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영업권 손상검사는 현금창출단위를 기준으로 실시하지만 그 목적은 영업권 장부금액이 취득한 영업권과 사업결합 후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영업권 모두에 의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에서 회수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다만, 영업권 손상평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적 문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수준의 수용가능한 신뢰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셋째,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 전체에 대한 손상검사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회수가능가액에 반영되는 다른 자산의 미인식가치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넷째,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의 손상검사를 통합하는 손상모형을 채택하여, 다른 자산의 손상이 영업권 손상차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조화하였다. 즉, 영업권 손상검사 전에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에도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와 일관된 측정기준(회수가능액)을 채택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는 영업권 손상차손에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이 반영되지 않도록 의도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권 손상차손은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되어 회계정보 신뢰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기준서 체계 내에서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이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K-IFRS 1139에 의해서 손상평가되는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손상검사의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IASB는 개별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측정기준의 상충이 영업권 손상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기준서의 문헌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상충에 따른 회계인식의 결과는 K-IFRS 1136의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자산의 손상기준과 영업권 손상검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적용은 IASB가 의도하지 않은 기준서간 상충문제로 인하여 영업권 손상차손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충문제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업권 손상검사의 측정기준 상충문제를 가상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으나,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대출채권 이외에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자산에 대한 문제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실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사례연구와 대출채권 외의 다른 자산에 대한 분석에 관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수근 · 이준일 · 박선영. 2011. “유지그룹의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과 하이마트 인수관련 영업권 회계처리사례”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 91-121.
- 권수영 · 권기정 · 김종일 · 남혜정. 2013. “사업결합 시 취득한 영업권 손상평가 실무지침”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3(1) : 123-155.
- 노민영 · 유영태 · 장진호. 2012. “K-IFRS도입과 영업권 손상인식”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 133-162.
- 백정환. 2015.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 손상인식의 재량의사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40권 제4호 : 141-178.
- 손 혁 · 박영진 · 박성진. 2011.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손상검사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 207-238.
- 오명전. 2014. “K-IFRS에 따른 영업권 손상검사 사례” 국제회계연구 53 : 210-229.
- 오문성 · 김성환 · 박진모. 2010. “K-IFRS 적용이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 359-384.
- 이우택. 2003. “영업권회계의 주요 쟁점과 해결과제에 관한 연구 -최근의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0권 제1호 : 157-172.
- 정대현 · 배성미 · 김종대. 2015. “K-IFRS 도입이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0권 제3호 : 299-337.
- 정태범. 2014.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 163-187.
- 정휘영. 2013. “K-IFRS 도입이 주요 재무비율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 155-189.
- 조현우. 2009. “영업권손상차손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 283-306.
- 한국회계기준원. 20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 한국회계기준원. 20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자산.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 2001.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42. Goodwill and Other Intangible Assets. Norwalk, CT : FASB.
- AbuGhazaleh, N, M., O. M. Al-Hares, and C. Roberts. 2011. Accounting discretion in goodwill impairments : UK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22(3) : 165-204.
- Beatty, A., and J. Weber. 2006. Accounting discretion in fair value estimates : An examination of SFAS 142 goodwill impair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2) : 257-288.
- Godfrey, J. M., and P. S. Koh. 2009. Goodwill impairment as a reflection of investment

- opportunities. *Accounting and Finance* 49(1) : 117–140.
- Jarva, H. 2009. Do firms manage fair value estimates? An examination of SFAS 142 goodwill impairment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36(9) : 1059–1086.
- Jordan, C., and S. Clark. 2004. Big bath earnings management : The case of goodwill impairment under SFAS no.142.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20(2) : 63–70.
- McCarthy, M. G., and D. K. Schneider. 1995. Market reaction of goodwill : some empirical evidence.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1 : 69–81.
- Ramanna, K., and R. L. Watts. 2012. Evidence on the use of unverifiable estimates in required goodwill impairment.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7(4) : 749–780.

Reliability of Goodwill Impairment Loss and Inconsistency between K-IFRS 1136 and other Standards

Jae Won Yoon*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principle of goodwill impairment test based on cash-generating unit under K-IFRS 1136 and indicates the a problem of inconsistency on the measurement requirement between K-IFRS 1136 and other standards, damaging the reliability of goodwill impairment loss.

Under K-IFRS 1136, impairment test for all assets and cash-generating unit including goodwill are integrated into one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impairment loss on goodwill. The Standard specifies that an entity shall assess whether there is any indication that an asset may be impaired for all assets and cash-generating unit before impairment test of goodwill and if any indication exists, the entity shall estimate the recoverable amount of the asset. And then the same measurement basis, a recoverable amount, applies to the impairment test on the cash-generating unit containing goodwill. The objective of these standards is to ensure that the unrecognized impairment losses for the individual assets on book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coverable amount for the cash-generating unit containing goodwill. If so, impairment loss of individual asset is recognize as impairment loss of goodwill and the reliability of impairment information is deteriorated.

This problem comes up when the asset not applied by K-IFRS 1136 is included in the cash-generating unit. This study shows it with the case that the impairment test for the cash-generating unit consists of mainly loan and goodwill for bank. Under K-IFRS 1139, the loss for the individual loan is measured by an incurred loss model, but under K-IFRS 1136, the future cash flows of loan estimating the recoverable amount of cash-generating unit may be measured by and expected loss model. In this is the case, the amount caused by the difference of impairment measurement basis for loan recognized as the impairment loss for goodwill. This is undesirable for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usefulness and the purpose of the impairment test. The measurement basis of impairment for the same asset should be consistent.

* Associate Professor, Business School, Hongik University, jwoon@hongik.ac.kr

This study differs from the existing papers discussed the overall procedures and general problems of impairment test in that it focuses on the measurement issue relating to the inconsistencies of IFRS. The paper also provid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suggestions to help the financial statement preparers, auditors and users for their better decisions.

〈Key words〉 Impairment Loss, Goodwill, Cash—generating Unit, Reliability, K—IFRS 1136